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46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강동길, 강석주, 김성준,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남창진, 박승진, 박철성,
봉양순, 송도호, 오금란,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정준호, 최민규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매년 공고를 통해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대부분이 기존 감리업체이며 서류상 변동도 거의 없어 반복적인 신청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연간 해체공사감리자 수요 건수가 명부 등재자 수에 크게 미달하여 업무 배정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바, 모집공고 주기를 현행 매년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기회 균등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등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모집공고 주기를 현행 매년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1호).
- 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9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매년”을 “2년에”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진흥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진흥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1조제5항”을 “영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의1(지방자치단체의 책무)시</u> 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 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 집·등재 등) ① <u>서울특별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 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 라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 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세부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p> <p>1. ~ 3. (생략) ② ~ ⑥ (생략)</p> <p>제7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 집·등재 등) ① 시장은 영 제2 2조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 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체공사 건축 물의 규모별 해체공사감리자 기 준을 정하거나 해체공사감리 업 무 범위 등을 별도로 정하여 모 집공고를 할 수 있다.</p> <p>1. 모집공고는 <u>매년</u> 1회 이상 실</p>	<p><u>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서</u> <u>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u> <u>다)</u>----- -----.</p> <p>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 집·등재 등) ① <u>시장</u>-----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7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 집·등재 등) ① ----- ----- ----- ----- ----- ----- ----- ----- -----.</p> <p>1. ----- <u>2년</u>에 -----</p>

시하여야 한다.

2. 3. (생략)

②·③ (생략)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작성·관리)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자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
서를,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
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변
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청
장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
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

-----.

2.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작성·관리)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건
설기술 진흥법」-----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모집공고 주기를 현행 매년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변경하고(안 제7조제1항제1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9조제4항)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계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